

제 1428 호
1989. 1. 7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영
 편집인: 공보관 윤두영
 전화번호: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보

차례

◎ 공문시행	
’88 제 11 회작상심사결과발표.....	4
◎ 조 례	
제 2388 호 : 서울특별시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7
제 2389 호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9
◎ 규 칙	
제 2266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14
제 2267 호 :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23

(이면계속)

이 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교육규칙

제 2387 호 : 새세대생활관실치조례중개정조례	38
----------------------------------	----

㉡ 고 시

제 98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38
제 100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39
제 1011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외청사) 실시계획인가	39
제 1014 호 : 주택개발사업개발사업분양처분	40
제 1032 호 : '89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40
제 1035 호 : 쇠고기, 돼지고기연동가격및연동가격표	41
제 1037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지적승인	42
제 1042 호 : 사도성분 등록사항	43
제 104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3
제 1048 호 : 사망지정지해제	44
제 1060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허가	49

㉢ 공 고

제 983 호 : 2 중전기공사업면허실효	49
제 987 호 : 도시공원시설위탁관리허가	50
제 99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0
제 992 호 : 개포택기개발사업완료및환지계획변경과환지확정처분	51
제 995 호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및환지계획변경과환지처분	52
제 998 호 : 용마자연공원 조성사업기간변경시행허가	52
제 999 호 : 2 중전기공사업행정처분	53
제 1003 호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관인신조	54
제 102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54
제 1029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실시계획	55
제 1030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관계도면공람	55
제 1032 호 : 2 중전기공사업면허취소	56
제 1034 호 :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제	56

㉣ 구 고 시

제 1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7
제 29 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역획정에 따른동명칭변경고시	57

제 32 호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	61
제 103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변경	62
제 10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변경	62
제 10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허가	63
제 12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64
제 345 호 : 하천결용 (건설전화지하관포매설) 허가	64

◎ 구 광 고

제 63 호 : 관인개각	65
제 66 호 : 관인사용승인	68
제 67 호 : 관인사용승인	68
제 107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	69
제 13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	70
제 174 호 : 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취소처분	70

◎ 사업소고시

제 36 호 : 하천계속점용허가	71
제 37 호 : 하천계속점용허가	71

◎ 사 령

공 문 시 행

“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

(관 인 성 략)

서 울 특 별 시

시정 01226-308

(731-6151)

1988. 12. 30.

수 신 : 수신처참조

(3 년)

제 목 : '88 제 11 회 착상심사결과 통보

1. '88 년 제 11 회 시정발전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적극 권장하여 시정발전 착상 제도 운영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첨 부 : '88 년 제 11 회 채택착상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시 정 개 발 담 당 관 전 결)

수신처 : 서파 1-71, 서사 1-57, 서구 1-22, 서보 1-22.

작성동일	작성내용	비고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1228 - 최종침전지 사이펀 슬러지 플렉타 이끼제거용 살수노즐 고안 ○ 탄천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월류판과 벽체의 이끼 및 부유물을 월 6회 인부를 동원하여 제거하고 있는바 ○ 동절기에 침전지의 수표면 결빙 방지를 위해 시설되어 있는 사이펀 슬러지 플렉타(오니흡수관)의 살수 노즐에 파이프와 노즐을 개조 부착하여 고압수를 분사토록 하므로서 이끼식식 방지 (기대효과) ○ 이끼 제거에 따른 역산절감 (년간 20,016천원) 작성자 : 탄천하수처리장 지방기계원 노 김 현 철 	<p>시장표창 및시상금 30만원</p>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1225 - 예산절감 및 하수처리 향상 ○ 중앙 하수처리장 침전기 월류판과 방류수 통로의 이끼 및 부유물을 인부를 동원하여 제거하고 있는바 ○ 향상 가동중인 플렉타(오니흡수관)에 빗자루를 부착하여 월류판과 방류수 통로의 이끼 및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 (기대효과) ○ 이끼제거의 기계화로 예산절감 (년간 4,307천원) 작성자 : 중앙하수처리장 지방기계기사 최 창 규 	<p>시장표창 및시상금 30만원</p>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963 -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에 복합건물 (시장+공동주택) 건축 방안 ○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재래시장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공업지역으로 변경없이 복합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여 계속 낙후된 상태로 존치하는바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없이 복합건물 (시장기능+주거기능)이 건축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을 추가 규정 (기대효과) ○ 낙후된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시장기능 활성화 ○ 주택개발사업 없이 주택난 해결로 주택개발비 절감 (서울시의 경우 2,450억원) 작성자 : 주택기획과 지방행정주사 조 대 현 	<p>시장표창 및시상금 10만원</p>

착상등급	착 상 내 용	비 고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1230 - 한국전력 수전설비 통합 ○ 중량하수처리장과 장안 전농유수지는 환율타리안에 있으나 한전 공급설비를 별도로 시설공급하고 있어 전력요금 낭비 및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바 ○ 하수처리장과 유수지의 전력설비를 통합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 (기대효과) ○ 전력요금 절감 (년간 69,323천원) ○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인력감축 착상자 : 중량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사 배현주 	시장표창 및시상금 10만원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 가로환경미화원 안전봉제작 ○ 가로환경미화원이 야간이나 새벽작업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한바, ○ 가로청소작업시 사용하는 대빗자루 하단게 가벼운 P.V.C 파이프 및 야광반사지를 이용한 안전봉을 부착하여 차량 전조등이 반사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기대효과) ○ 가로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 착상자 : 동대문구 청소과 지방행정서기 표순석 	시장표창 및시상금 10만원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1288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 매출일자 및 양식변경 ○ 공채의 매출 기준일이 매월말일로 되어있어 실제 매출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이차 및 원천징수세액을 산출 선급후 매출하고 ○ 상환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는 소지인이 상환청구서와 증권을 제출하면 증권면의 후면원리금 상환내역난에 상환금출 기재하여 개교부하고 있는바, ○ 공채의 매출기준일을 실제매출일로 변경하여 선급이자, 원천징수세액 산출에 따른 업무생략으로 공채발행시간을 단축하고 ○ 공채양식에 원리금 분할상환권을 첨부하여 상환금교부시, 상환권을 절취하고 증권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시장표창 및시상금 10만원

확상등급	확 상 내 용		비 고
노력상	(기대효과) ○ 공채발생시간 단축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 상환업무의 월증분산을 기할 수 있고 각종유류 발생요인 제거 착상자: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회 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조 례</div> <p>◎서울특별시조례제 2388 호</p> <p>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 관리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p>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1호의 등계조사원란 다음에 개발계장란 및 지도자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개발계장	5 급상당	·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 여가생활지도 및 보급 · 여가생활지도자의 육성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5년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일반직 6급(별정직 5급상당 포함)으로 3년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경력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직격자로 인정한 자
지도사	6 급상당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4년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자

지 도 사	6 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등의 운영 · 사회체육의 진흥 및 협조 · 여가생활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일반직 7 급 (별정직 7 급상당 포함)으로 2 년이상 전전생활분야 행정근무경력 자 4.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7 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등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 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 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 년이상 인 자 3.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3 년이상인 자 4. 일반직 8 급으로 2 년이상 전전생활분야 행정 근무경력자
<p>[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 4 호의 전산처리사관 앞에 전산처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전 산 처 리 관	5 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총괄 · 전산작업처리 총괄 · 전산화 업무 분석 및 개발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 년이상 전산실무 경력자 · 전문대학 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10 년 이상 전산실무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5 급 (별정직 6 급상당 포함)으로 3 년이상 전산업무 경력 자

전산처리반	5 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이상 전산실무 경력자 • 기타 임용 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서울특별시조례 238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p>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8 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p> <p>제 3 조 (사업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수있다.</p>			<p>제 4 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p> <p>제 5 조 (정관)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p>제 6 조 (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p>

<p>제 2 장 임원과 직원</p> <p>제 7 조 (임원)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제 8 조 (사장) ①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9 조 (이사) ①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및 투자관리관이 된다.</p> <p>②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p> <p>제 10 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p>	<p>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p> <p>제 11 조 (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p> <p>제 12 조 (점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임임원은 사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 13 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 14 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정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p> <p>②제 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p>
--	---

제 15 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6 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 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업 무

제 18 조 (기본업무) 공사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락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5. 도시기반시설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행하는 유흥지의 매수, 토지의 선매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행하는 매수청구물 받은 이권적지의 매입 및 기타 토지의 매수탁.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 1 호 내지 8 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 19 조 (대행업무) 공사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시장이 정한다.

제 4 장 재무회계

제 20 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에

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2 조 (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비부담)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24 조 (재해보전적 팀금) 공사는 권리주체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할 수 있다.

제 25 조 (제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

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26 조 (순이익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을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 이월결손금
③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준비금의 매년적립할 금액의 기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27 조 (공사채 발행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 5장 감독
제 28 조 (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p> <p>2. 인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p> <p>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29 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제 6 장 보 칙</p> <p>제 30 조 (시유재산의 유상사용) 시의 재산을 공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3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제 31 조 (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 3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p>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 2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 (예산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p> <p>④ (공무원 파견조치등) 시장은 시장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2266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2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의(2) 2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내지 제 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 (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또는 사고일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제 6조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①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30점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여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벌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취소처분에 도달하는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검거 회수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며, 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공제전의 처분벌점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제 7조 (행정처분 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다.

- 1.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
- 2. 별표 2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다.

- 1. 별표 3의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개별기준 및 별표 4의 교통사고 야기시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의하여 받은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에 도달하는 때
- 2. 산림법 또는 하천법에 위반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때

제 8조 (정지처분기간외 산정)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당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은 회수한 날로부터 집행하되, 그 회수는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하고, 회수시간에 관계없이 회수한 날을 1일로 계산한다.

<p>제8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벌점이 두거운 피해부분만을 적용)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자가 교</p>	<p>정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 성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경일수룰 정지처분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표에 의한 감경일수가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감경일수룰 공제한다.</p>
<p>교 정 교 육 시 령 성 적</p> <p>80 점 이상</p> <p>60 점 이상 80 점 미만</p> <p>60 점 미만</p>	<p>감 경 일 수</p> <p>20 일</p> <p>15 일</p> <p>10 일</p>
<p>② 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p>	<p>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제 1항본문중 "상습적위반" 및 사고야기자에 대하여는"을 삭제하고, "10월이내의"를 각각 "1년이내의"로 하며,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과거 1년이내에면허정지처분을받은회수</p> <p>1 회</p> <p>2 회</p> <p>3 회</p>	<p>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p> <p>10일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10 일)</p> <p>20일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20 일)</p> <p>30일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30 일)</p>
<p>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정지처분집행일수의 한계등) ① 면허정지 처분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중인 자가</p>	<p>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 정지처분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산에 있어서 10 자리 미만의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p>

<p>'아니하며, 정지처분점행일수의 감경에 있어서 1자리 미만의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정지처분의 기간(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다른 법령위반자의 행정처분) ①산립법 또는 하천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②산립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집행된 운전면허 정지일수에 상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금지</p>	<p>처분기간중인 자가 출국하게 되어 면허증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금지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2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7 호서식] 및 [별지 제 8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자에 대한 누산점수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별표 2) 운전면허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1	교통사고야기 도주	제 50 조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취한상태 에서 운전	제 41 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액 1ℓ에 알콜 0.5 mg, 호흡 1ℓ 에 알콜 0.25 mg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때

입력 번호	위 반 항 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비 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에 만취한 상태 (혈액 1ml에 알콜 1mg, 호흡 1ℓ에 알콜 0.5mg 이상) 에서 운전한 때
3	타인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제 78 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 격 사 유	제 78 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다음의 신체장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5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제 78 조	취소	○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 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미필하였거나 불합격한 때
6	운전면허 행정 처분기간중 운 전행위	제 78 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 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 78 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 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달음하는 증명서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행정처분기간중 인 자동차운전 (무적차량운전 포함)	제 78 조	취소	○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 전(무적차량운전 포함)한 때 (고의 과실 불문)
9	자동차를 이용 하여 범죄행위 를 한 때	제 78 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범죄에 이 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 · 강도, 강간, 방화 · 유괴, 불법감금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취 소사유에 해당 한 때	산림법 제94조	취소	○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 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법 제25조 제 3 항	취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 는 때

(별표 4)			
교통사고아기시 정지처분 개별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45	사고 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이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 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이 있는 사고
물적 피해 교통 사고	10만원마다	1	경비업소로 허가된 정비공장의 견적서에 의한 차의 피해금액과 화물등의 피해금 액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교통사고아기시 조 치불이행	제 50 조 제 1항	30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 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60	○ 신고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 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교통사고발생시 신 고 불이행	제 50 조 제 2항		교통사고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였으나

불 이 행 사 항	적 용 범 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교통사고발생시 신고불이행	제 50 조 제 2 항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한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야기후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경찰관 (경찰관서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야기후 도주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사고야기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그중 무거운 벌점만을 적용한다. 2.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원인중 주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5. 물적피해액 10 만원미만은 산입하지 아니며, 물적피해에 따른 벌점은 50 점을 넘지 못한다. 6. 교통사고시 물적피해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측의 물적피해 (차 및 화물의 피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p>(별표 5) <u>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u></p>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정지기간	내 용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산림법 제94조	6월이내	○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2	불법 채취한 하천 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하천법 제25조의 3	6월이내	○ 하천관리청의 면허정지 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별지 제 7 호 서식)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처리대장

일련번호	리스트 제일 번호	인적사항 면허번호 성명	부과 의 처분 일수 (점)	가 산			감 경				살해 처분 일수	행정처분 집행기간 (자-지)	보관품 (면허증)			결 과		
				출석 지정 일	출석 일	가산 일수	과거 1년 간 정지 처분 일수	정정 교육 성적	감경 일수	무 전 자 (근거 감정 일수)			행소 검거 감정	구분 회수 (원액 환)	보관 및 비 환 년월일	확인 담당 인 수령자 일	지 장	과 장
			인			회												
			인			회												
			인			회												
			인			회												
			인			회												
			인			회												
			인			회												

제 1428 호

제 1989.1.7 80-21

(별지 제 8 호서식)

계 호

교 정 교 육 통 지 서

1. 면허번호: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도로교통법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교육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정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 평가
점수에 따라 10 ~ 20 일간의 정지처분일수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일 시		
교육장소		
교육반별	법규위반반	교통사고반

년 월 일

경 찰 서 장

㉾

◎서울특별시규칙 제 2267 호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산하각급기관 및 자치구(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행하는 차량의 정수배정기준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차량정수 배정기준) 각급기관의 차종, 차형별 차량정수 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 (차량정수의 배정절차) 각급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 상호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기관이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차종, 차형 변경승인) 각급기관이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차량교체승인) 각급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차량교환승인) 각급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제 3 조 내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별지 제 6 호서식 또는 별지

<p>제 7 호서식의 배정확인서 또는 승인 확인서를 관할등록청에 보내야 한다.</p> <p>㉔ 각급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발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발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㉕ 등록신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배정확인서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무출 발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차량의 등록발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㉖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 일 이내에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발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실태조사 및 사전명령) ㉑ 시장은 연 1 회 이상 차량의 관리, 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p>	<p>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종 및 차형별정수와 차량실수와 의 일치여부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행사항등 <p>㉒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 사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차량정수의 감축통보) 시장은 각급기관의 기능의 축소, 변경 기타 사유로 당해 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감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제 11 조 (자가운전여 대한 차량유지비) 승용차량을 소유하는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그 승용차량을 공무수행에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표제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정수의 변경을 할지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별표 1] 차량 정수별 정 기준</p> <p>1. 승용차량의 정수 가. 시장, 부시장 및 장관급, 차관급</p> <p>1) 시의본청</p>	<p>전용 대형승용차 각 1대</p> <p>나. 의전용</p> <p>1) 시의본청 : 대형승용차 5대 이내</p> <p>2) 1급이상의 각급기관 : 대형승용차 1대</p> <p>3) 구의 본청 및 2급이하의 각급기관 : 중형승용차 1대</p> <p>4) 시장의 공관 : 중형승용차 1대</p> <p>다. 경호용</p> <p>시의 본청 : 대형승용차 2대</p> <p>라. 업무용</p>		
<p>중형 승용차</p> <p>10 대 이 내</p>	<p>중소형 승용차</p> <p>5 대 이 내</p>	<p>소형 및 절형 승용차</p> <p>50 대 이 내</p>	
<p style="text-align: center;">2. 구의 본청 및 기타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분</p> <p>기관별</p>	<p>중형 승용차</p>	<p>중소형 승용차</p>	<p>소형 및 절형 승용차</p>
<p>시립 대학교</p>	<p>4 대 이 내</p>	<p>2 대 이 내</p>	<p>1 대 이 내</p>
<p>구의 본청</p>	<p>2 대 이 내</p>	<p>1 대 이 내</p>	<p>5 대 이 내</p>
<p>시공무원교육원</p>	<p>2 대 이 내</p>	<p>1 대 이 내</p>	<p>2 대 이 내</p>
<p>1 급 기관</p>	<p>1 대 이 내</p>	<p>2 대 이 내</p>	<p>3 대 이 내</p>

기관별 구분	중형승용차	중소형승용차	소형및절형승용차
2 ~ 3 급 기관	1 대 이 내	1 대 이 내	2 대 이 내
4 급 기관		1 대 이 내	2 대 이 내
5 급 기관 (민방위교육장포함)			2 대 이 내
소방본부및소방서	3 대 이 내	2 대 이 내	
기 타 사 업 소			2 대 이 내

2. 승합용차량의 정수

차 형 별	배 정 대 상 및 대 수
대형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 본청 : 정원 100 명당 1 대 ○ 교육훈련용 및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의 본 청 : 1 대이내 · 시공무원교육원 : 4 대이내 · 시 립 대 학 교 : 2 대이내 · 시 립 유 아 원 : 2 대이내 · 기 타 : 소요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배정
중형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등을 참작하여 소요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1 대이내 ○ 기타 : 소요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배정
소형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의 이동을 요하는 업무등 기관외 기능상 단독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동력이 요청되는 경우 배정

3. 화물용차량의 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및 대 수
업 무 용	○ 시의 본청, 구의 본청,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의 업무량을 참작 적정대수 배정
건설사업용	○ 구의 본청 및 각 사업소의 건설관리 업무량등을 참작 적정대수 배정
공 원 녹 지 사 업 용	○ 구의 본청 및 각 사업소의 공원·녹지 사업량등을 참작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 구의 본청에 배정 ○ 지방세규모·부과 징수업무등을 참작하여 배정
환경사업용 (정소용포함)	○ 구의 본청 및 해당 사업소에 배정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 및 처분장의 거리등을 참작하고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상 하 수 도 사 업 용	○ 각종 공해의 조사·검사의 업무량을 참작하여 배정 ○ 시의 본청, 구의 본청, 해당 사업소에 배정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참작하여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교통사업용	○ 시의 본청, 경찰국, 해당 사업소에 배정 ○ 도로시설물(단내관·신호등)등 관리의 업무량에 따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 시의 본청, 구의 본청 및 사업소에 배정 ○ 각종 단속, 순찰, 지도업무등 업무량을 참작하여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 현장지도·감독업무를 행하는 각급 기관에 배정 ○ 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상 차량보유가 불가되 할 경우에 적정대수 배정

4. 특수용차량의 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및 대 수
청 소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 본청에 배정 ○ 관할구역내 가로청소용으로 가로청소 연장등을 참작하여 적정대수 배정
가 로 동 관 리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 본청 및 소요사업소에 배정 ○ 관할구역내의 가로동 대수 및 가로동 설치규모(총연장)에 따라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본청 및 소요사업소에 배정 ○ 각종 사업의 성격·업무량등을 참작하여 적정대수 배정
<p>5. 모든 승용차량, 승합용차량, 화물용차량, 특수용 차량의 정수배정은 기준범위내에서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대수 범위내에서 운용한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차량유지비의지급대상, 지급기준</u></p> <p>1. 지급대상: 시장으로부터 자가운전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공무수행에 사용하는 1급내지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특정직공무원 포함)</p> <p>2. 대상자변경</p> <p>(1) 자가운전대상자로 확정된 직위의 대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자가운전대상자가 자동 승계된다.</p> <p>(2) 자가운전대상자가 변경된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3. 확인방법: 자가운전대상자는 본인 소유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갑)등본 1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4. 차량유지비 지급일자와 지급방법
 : 자가운전 차량을 공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매월 1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며, 자가운전 운행일률 기준으로하여 그 월액을 일할 제산하여 지급한다.

5. 차량유지비 지급기관: 자가운전자 (파견·교육증인자 포함)의 차량유지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6. 차량유지비 정산

(1) 차량유지비를 자가운전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직년달 근무상황을 참작하여 다음달 차량유지비 지급시 정산한다.

(2) 1회에 계속 8일 이상의 휴가, 근무지외의 국내외 출장 및 국외파견·교육자에 대하여는 월중 7일을 초과하는 휴가·출장·국외파견·교육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및 국

방대학원에 임교한 자가운전자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합숙기간내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비합숙기간중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

다. 비합숙기간중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규정에 준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차량유지비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중 철도요금·원거교통비등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휴직·정직·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가운전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파번호)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

제 목 차량정수배정 요청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같
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수배정 요청내역

차 량 소속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요청 정수	취득계획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차량구입비 및 운 영비 책정 예산액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비 고

비 고 :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참 부 : 배정요청에 관한 세부설명서 1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2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청

제 목 임시차량정수배정 요청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차량정수배정 요청내역

차량 소속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요청 정수	취득계획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차량구입비 및 운 영비 책정 예산액	차량등록 예장관서명	사용기간	비 고

비 고 :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배정요청에 관한 세부설명서 1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3 호 서식]

기 관 령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인 서울특별시
 계 목 차종변경 승인 요청
 차형변경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변경(차형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변경(차형변경)승인요청내역

차 량 소속기관	차 량					
	차 종	차 형	차 명	차대번호	최초등록일자 및 은행일수	등록번호

변 경 할 차 량						비 고
차 종	차 형	차 명	연 식	취득제회(신규구 입또는관리전환)	차량예정 등록관서명	

비 고 :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직제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변경을 요하는 세부설명서 1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4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

계 목 차량교체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체승인요청내역

차 량 소속기관	현 차 량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내번호	최고등록일수 및 운행일수	등록번호

교 체 할 차 량				비 고
차 명	연 식	취득계획(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차 량 예 정 등록관서명	

비 고 :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체를 요하는 세부설명서 및 문제증명서류 1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5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

제 목 차량교환승인요청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환승인요청내역

차량소속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비고
현재	변경							

비 고 : 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 1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6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계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등록할 차량		등록말소할 차량	
차량소속기관		차량소속기관	
차종		차종	
차형		차형	
차명		차명	
연식		연식	
지방세법제 126 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		차대번호	
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	자: 지:	등록번호	
비고		비고	

4. 비 고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 조치들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7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 1. 승인번호: 계 호
-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차	종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	재	차 량 소 속 기 관	등록관서
변	경	차 량 소 속 기 관	등록관서

4. 비 고 :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 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 관 의 장

[별지 제 8 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19 . . .
 수 신 서울특별시청 남산 ④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서울특별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패번호	⑥ 등록번호	⑦ 등록또는등록 말소일자	⑧ 비 고
		()					

비 고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 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교육규칙

(공포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세세대 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 12. 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 상 준

◎서울특별시조례제 2387 호

새세대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새세대생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새세대생활관"을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으로 한다.

제 1 조중 "새세대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 조중 "생활관"을 "교육원"으로, "강동구"를 "송파구"로 한다.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중 "생활관"을 "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98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49(88.12.6)호, 제 976(88.12.14)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및 지적고시된 기여동 219-29-223-2번지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 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항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통합니다.

가.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8)

1988. 12

서울특별시강

- 공 략 개 요 -

1. 사업명 : 마천동 129-12번지의 2개소 도로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 : 기여동 219-29-223-2번지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6 m,
L = 90 m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1년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장)

6. 기 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1002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73 호 (88.
(12.12)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조서

회, 고시제 6 호 (88.11.21)로 도시
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된 아래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
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관악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1988. 12. .
서울특별시청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관악구 봉천동산 70-1 일대	27,758	감 905.90	26,852.10	관악중학교
"	"	관악구 신림동 220-1 일대	19,221	감 1,855	17,366	신림중학교
"	"	관악구 신림동 111-3 일대	19,464	감 967	18,497	남북국민학교

나. 도 면 : 구청 비치도면 참조

○서울특별시고시제 1011 호
도시계획사업(공공의청사)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 제 566 호(88.6.2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의청사)결정고시
및 서울시고시 제 637 호(88.7.28)로
지적승인고시된 용산구민회관 신축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용외청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법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중무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8.12.

서울특별시 장

○인가개요

가. 사업시행지 : 한강로 3가 63-379
의 1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용산구민회
관 신축공사

다. 사업개요

- 대지면적 : 1,533 평
- 건축면적 : 1,750 평 (지하 1,
지상 4 층)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9.1 ~ 12.31

바. 사용도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14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분양처분

1.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인 역촌구역(2차)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이를 고시한다.

2. 분양처분된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을 때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고 동분양처분관련도서는 은평구청 주택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다 음

구역명	필수	위 치	면 적
역촌구역 (2차)	40	은평구역촌동산 22-2일대	13,239.60㎡

1988.12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032 호

1989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술 지방자치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12

서울특별시 장

연년	회 계 별	예 산 액
1	○ 일반회계	1,534,862 백만원
2	○ 특별회계	1,371,870 "
	·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120,577 "
	·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42,550 "
	·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19,491 "
	· 특정건축물정리비 특별회계	2,539 "
	·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308,919 "
	·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153,802 "
	· 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	90,539 "
	· 수도사업 특별회계	284,308 "
	·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117,870 "
	· 병원사업 특별회계	4,740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670 "
	·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137,690 "
	·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41,625 "
	· 사용료 수수료 통합징수비 특별회계	20,550 "

◎서울특별시고시제 1035 호

최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 및

단통가격표

최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제도에 관한 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88.9.14) 제 8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의 최고기, 돼지고기 및 연동가격

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12. 28

서울특별시 장

1. 최고기 연동고시가격 (정육 100 그램당) 970 원
2. 돼지고기 연동고시가격 (정육 100 그램당) 300 원
3. 산지소감 및 최고기 기준연동가격표: 별첨
4. 시행일: 1988.12.29 부터

산지소값기준연동가격 (추가) (단위: 원)		지옥경락가격 (坪당)	적용연동가격 (정육 500g당)
산지소값 (숫소 400kg)	적용연동가격 (정육 500g)	7,000	5,350
		7,100	5,450
		7,200	5,500
		7,300	5,600
		7,400	5,650
		7,500	5,700
		7,600	5,800
		7,700	5,850
		7,800	5,950
		7,900	6,000
		8,000	6,050
1,620,000	4,800		
1,640,000	4,850		
1,660,000	4,900		
1,680,000	5,000		
1,700,000	5,050		
1,720,000	5,100		
1,740,000	5,150		
1,760,000	5,200		
1,780,000	5,250		
1,800,000	5,300		
1,820,000	5,350		
1,840,000	5,400		
1,860,000	5,450		
1,880,000	5,500		
1,900,000	5,550		
1,920,000	5,600		
1,940,000	5,650		
1,960,000	5,700		
1,980,000	5,750		
2,000,000	5,800		
최고기 기준연동가격표(추가) (단위: 원)			
지옥경락가격 (坪당)	적용연동가격 (정육 500g당)		
6,600	5,100		
6,700	5,150		
6,800	5,250		
6,900	5,300		

◎서울특별시고시제 1037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7호('88. 12. 27)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1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시설	주차장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앞 광장 (808-123) ~ 화랑교간 도림천 (241-122)	L = 20 ~ 26 m B = 760 m A = 16,800 m ²			
* 별첨표시 도면과 같음 (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042 호</p> <p>사료성분등록사항</p> <p>사료관리법 제 22 조 3 호의 규정에</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29.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아 래</p>						
등록번호	사료의종류	소재지	대표자	사료성분명칭 및 성분량	등록일자	비고
10-3	단미사료 (인산염 및 칼슘염류)	서울시서초구방배동 912-3	계봉구	P (인) : 22 % 이상 Ca (칼슘) : 15 % 이상 F (불소) : 0.2 % 이하	88.12.13	
<p>◎ 서울특별시고시제 1043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 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29. 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p> <p>나. 사업주체 : ㈜화성토건 대표 김주옥</p> <p>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p> <p>1) 위치 : 구로구 시흥동 산 4-13</p> <p>2) 면적 : 1,306.68 평방미터</p> <p>3) 규모 : 연립주택 3층 1동 21세대</p> <p>4) 사업시행기간 : '88.12 ~ '89.6</p>	

◎서울특별시고시제 1048 호

사람지정지 해제

1. 사람사업법 제20조 1항에 의거 사
 방지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보인다.

1988.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람지정지 해제내역

소 개 지				지 정 면 적	해 제 면 적	비 고
시	구	동	지 번	(㎡)	(㎡)	
서울	관악	봉천	산 81-1	43,339	43,339	
		"	산 89	115,042	115,042	
		"	산 104-1	60,000	60,000	
		"	산 110-1	1,884	1,884	
		"	산 113	29,523	29,523	
		"	산 115	15,074	15,074	
		"	산 116	10,612	10,612	
		"	산 117	10,512	10,512	
		"	산 118-1	10,147	10,147	
		"	산 148	4,463	4,463	
		"	산 162	373	373	
		"	산 163	1,862	1,862	
		"	산 48-1	81,323	81,323	
		"	산 53	62,975	62,975	
		"	산 59	172	172	
		"	산 1-1	13,884	13,884	
		"	산 2	17,355	17,355	
		"	산 3	20,330	20,330	
		"	산 66-1	38,827	38,827	
		"	산 67-1	10,165	10,165	
		"	산 70-1	1,858	1,858	

소 재 지				지 상 면 적 (㎡)	해 계 면 적 (㎡)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서울	관악	봉천	산 24	11,847	11,847	
			산 4	1,103,410	1,103,410	
			산 6	41,851	41,851	
			산 8	63,914	63,914	
			산 10	2,975	2,975	
			산 13	6,248	6,248	
			산 14	19,835	19,835	
			산 15	19,835	19,835	
			산 16	106,414	106,414	
			산 25	6,942	6,942	
			산 27	20,430	20,430	
			산 45	15,669	15,669	
			산 29	20,727	20,727	
			산 31	27,670	27,670	
			산 32	11,107	11,107	
			산 33	13,091	13,091	
			산 34	16,760	16,760	
			산 35	41,356	41,356	
			산 38	6,562	6,562	
			산 40	4,431	4,431	
			산 40-1	104,034	104,034	
			산 54	18,766	18,766	
			산 55	5,432	5,432	
산 56	17,636	17,636				
산 57	6,080	6,080				
산 58	9,025	9,025				
산 62	10,083	10,083				
산 66-6	13,025	13,025				
산 101-1	2,282	2,282				
산 101-88	7,537	7,537				

소 재 지				지 정 면 적 (㎡)	해 제 면 적 (㎡)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서울	관악	북천	산 101-90	5,554	5,554		
			" 산 101-91	2,281	2,281		
			" 산 103-3	25,402	25,402		
			" 산 137	8,430	8,430		
			" 산 181-1	25,483	25,438		
			" 산 159	10,668	10,668		
			" 산 182	8,926	8,926		
			" 산 183	3,371	3,371		
			" 산 177	19,140	19,140		
			신림	산 90	17,159	17,159	
				" 산 92	12,661	12,661	
				" 산 93	91,339	91,339	
				" 산 97-1	41,355	41,355	
				" 산 99	15,570	15,570	
				" 산 106	27,002	27,002	
		" 산 107		12,893	12,893		
		" 산 108		55,405	55,405		
		" 산 110		11,454	11,454		
		" 산 111		19,835	19,835		
		" 산 112		54,248	54,248		
		" 산 114		12,988	12,988		
		" 산 117	227,803	227,803			
		" 산 119	15,372	15,372			
		" 산 120	9,223	9,223			
		" 산 121	53,554	53,554			
		" 산 125	19,389	19,389			
		" 산 127	4,347	4,347			
" 산 132	80,529	80,529					
" 산 158	18,889	18,889					

소 개 지				기 정 액	해 제 액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원)	(원)	
서울	관악	신림	산 133	4,658	4,658	
		"	산 195	21,719	21,719	
		"	산 197	34,493	34,493	
		"	산 56-2	2,956,576	2,956,576	
		"	산 29	484,364	484,364	
		"	산 30	27,670	27,670	
		"	산 31	36,397	36,397	
		"	사 32	44,628	44,628	
		"	산 50-2	252,298	252,298	
		"	산 58-2	63,869	63,869	
		"	산 59	41,752	41,752	
		"	산 60	8,926	8,926	
		"	산 61	92,827	92,827	
		"	산 62	34,017	34,017	
		"	산 65-2	6,863	6,863	
		"	산 66	1,388	1,388	
		"	산 67	1,795	1,795	
		"	산 68	52,026	52,026	
		"	산 71	36,991	36,991	
		"	산 72	14,341	14,341	
		"	산 74	26,975	26,975	
		"	산 49	9,917	9,917	
		"	산 51	69,223	69,223	
		"	산 113	2,678	2,678	
		"	산 112-1	4,860	4,860	
		"	산 122-2	4,463	4,463	
		"	산 122-3	6,248	6,248	
		"	산 122-6	17,950	17,950	
		"	산 131	5,818	5,818	
		"	산 133-1	24,727	24,727	
		"	산 201-2	1,110	1,110	
		"	산 202-2	36,694	36,694	
		"	산 203-2	9,223	9,223	

소 재 지				지 정 면 적 (㎡)	확 계 면 적 (㎡)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서울	관악	신림	산 203-2	12,992	12,992	
		"	산 188	5,620	5,620	
		"	산 57	593,953	593,953	
		"	산 58-5	61,785	61,785	
		"	산 75	22,215	22,215	
		"	산 76	47,669	47,669	
		"	산 78-1	33,719	33,719	
		"	산 78-2	39,669	39,669	
		"	산 79	11,405	11,405	
		"	산 80	16,760	16,760	
		"	산 83	20,529	20,529	
		"	산 85	3,471	3,471	
		"	산 86-1	44,033	44,033	
		"	산 87	139,833	139,833	
		"	산 88	13,884	13,844	
		"	산 89	26,707	26,707	
		"	산 134	67,736	67,736	
		"	산 136	4,562	4,562	
		"	산 150	3,669	3,669	
		"	산 156	74,777	74,777	
		"	산 157	85,388	85,388	
		"	산 159-3	73,001	73,001	
		"	산 189-1	13,415	13,415	
		"	산 191	54,415	54,415	
		"	산 192	14,975	14,975	
		"	산 194	7,144	7,144	
		"	산 17-2	8,231	8,231	
		"	산 20	6,479	6,479	
		"	산 22	10,473	10,473	
		"	산 23-1	9,217	9,217	
		"	산 24	31,921	31,921	
		"	산 25-2	17,799	17,799	

소 재 지				지 정 면 적 (㎡)	해 제 면 적 (㎡)	비 고	
시	구	동	지 번				
서울	관악	신림	산 26-2	5,365	5,365		
		·	산 27-1	92,331	92,331		
		·	산 27-2	2,083	2,083		
		·	산 28-2	20,781	20,781		
<p>◎서울특별시고시제 1060 호</p> <p>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허가</p> <p>1. 건설부고시 제153호('88.4.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62호('88.4.12)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용산구 도시계획시설(동빙고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동사업준시행허가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아래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 12.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용산구용산동6가 69-162</p> <p>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p>				<p>사업의명칭: 동빙고근린공원조성</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p> <p>1) 규모: 골조연습장의 4층 시설</p> <p>2) 면적: 13,048㎡</p> <p>라. 사업시행지: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사장 김 재 열</p> <p>마. 사업시행기간: '89.1.4-'89.12.3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983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실효</p> <p>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실효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12. 19 서울특별시 장</p>			
실 호 내 역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유
제 29 호	㈜풍진전기	임 복 래	도봉구수유3동 182-43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호 (공사업 폐지)			

◎서울특별시공고제 987 호

도시공원 시설 위탁관리허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62-10 낙성대 공원매점이 위탁관리 계속 허가권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 제 2 항에 의거 허가되고 같은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8.12.

서울특별시장

- 가. 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62-10 낙성대공원
- 나. 위탁관리자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62-10 이 승 춘
- 다. 위탁사항 : 매점 1 동
(매지 214.87㎡, 건평 147.57㎡)
- 라. 위탁관리기간 : 1989.1.1-1989.12.31
(1년간)

- 공 랑 요 지 -

가.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시일자	지피고시일자
미아 6동 691-17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미아 6동 691-17	B= 6m L= 17m	'88.12.5	'89.12.31	서고 3호 '69.1.18	서고 3호 '69.1.18
	미아 6동 1265-244	B= 6m L= 48m	"	"	"	"

◎서울특별시공고제 99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 12.

서울특별시장

나. 공사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토지(전물조서)
라. 원지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마. 공판장소: 도봉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주덕과
바. 공판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랍니다.

1988.12.22

서울특별시

가. 환지처분 내용

- 1) 사업명: 개포택지개발사업
- 2) 위치: 강남구개포, 대치, 포이동 서초구도곡, 우면, 양재, 서초, 신원, 원적, 염곡 및 과천시주암동 각일부
- 3) 면적: 6,491,289㎡
- 4) 시행자: 서울특별시
- 5) 시행기간: 82.2.18-88.12.31
- 6) 사업비: 128,229백만원
- 7) 환지처분: 각권지번, 신지번, 지목면적, 지적도면확정, 청산금 결정
- 8) 공부정리: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 도면은 환지처분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으며(중전토지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제외)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공부정리할 것이나 정수정산금 납부대상도지는 청산금 납부시까지 공부정리가 보류되며 체비지 소유자는 우리시 관제과에서 이전등기등 절차를 직접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992 호

개포택지개발 사업완료 및 환지계획 변경과 환지확정처분

1. '82.2.18 사업시행인가되어 사업 시행한 개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 일부변경 및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제61조 택지개발사업법 제16조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환지계획 일부변경과 환지처분하였 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와 서초구청,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및 과천시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하며 서류중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9)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청산금 내역 및 청산금 고지서는 별도 통지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995 호

가락토지 구획정리사업 및 환지계획 변경과 환지처분

1. '82.3.20 사업시행인가되어 사업시행한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일부변경 및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제 61조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환지계획 일부변경과 환지처분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와 송파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8.12.22

서울특별시장

가. 환지처분 내용

- 1) 사업명: 가락토지 구획정리사업
- 2) 위치: 송파구가락, 방이, 문정, 오금, 장지, 거여, 마천, 풍납,

둔촌, 성내, 이동 각일부

3) 면적: 7,455,066㎡

(기차분 31,143㎡)

4)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시행기간: '82.3.20-'82.12.31

6) 사업비: 112,995 백만원

7) 환지처분: 각필지별 신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확정, 청산금 결정

8) 공부정리: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부상의 지번, 지목, 면적도면은 환지처분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으며(중전토지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폐쇄됨)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공부정리할 것이나 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시까지 공부정리가 보류되며 체비지 소유자는 우리시 관재과에서 이전등기등 절차를 직접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청산금 내역 및 청산금 고지서는 별도 통지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998 호

윤마자연공원조성사업기간변경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제 225호(88.4.18)로 공원조성시행허가 되었으며 서울시

◎서울특별시공고제 1003 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관인 신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아래
와 같이 신조(폐기)하여 서울특별
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 7
조 및 제 9조에 의거 등록하고 서
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11조에 의
거 공고합니다.

1988.12.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
업비 특별회계 분임징
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
업비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인 신조

- 2. 사용개시(폐기)일자

1989.1.1

- 3. 공인의 인영

인
영



공
인
영

서울특별시 도시
개발사업비 특별
회계 분임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도시
개발사업비 특별
회계 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0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 1. 서울특별시고시제 48(74.4.20)호, 제 949(88.12.6)호, 제 976(88.12.14)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장지동 한림역상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 가.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 410-3405-5)
- 나. 공람기간 : 1988.12~1989.1

1988.12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 1. 사업명 : 한림여상진입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지 : 장지동 89-1 ~ 89-2 번지
-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8 m, L = 90 m
-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년
-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6. 기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문의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029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실시계획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27 호 (88.12.27)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037 호 (88.12.28)로 지적고시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88.12.31 ~ 89.1.14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토목과및건설관리과
 1988.12.3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관악구 신림동 808-129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립천 (서울대입구) 복개공사
- 다. 규 모 : 하천복개 B = 21.4 m, L = 77.8 m
- 라.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 1989.1 ~ 1989.7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사 : 생략
- 사. 위치도 및 계획정면도 : 생략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 (880-34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030 호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 1.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도봉구청인가 토목 30350- (88.10.20) 호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한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88.12 ~ 88.1)
-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p>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12. . 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공고제 1032 호</p> <p>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 취소</p> <p>전기공사업법 제 31조 제 1항의 규</p>	<p>경에 의거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 . 서울특별시장</p>
--	--

- 다 음 -

면허번호	업 제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제 163 호	오경전기 설비공사	영등포구신길동 119-4	유경열	제 7 조 위반	제 31 조 제 1 항에 의거 면허취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서울특별시공고제 1034 호</p> <p>서울특별시 금고업무 대행기관 지정</p> <p>지방재정법 제 64 조 및 동시행령 제 72 조, 제 73 조 제 1 항에 의거 금고 업무 취급 일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 6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 .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업무 대상회계명 :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2. 금고업무 대행기간 : 한국주택은행 3. 금고업무 대행기간 : '89. 1. 1 ~ '89.12.31
---	---

구 고 시

◎강서구고시제 18 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5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 .

강 서 구 청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수혜 : (주)천진주택
대표 박태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2. 변경내역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1 동 201-1번지의 3필지

나. 면적 : 4,104 ㎡

다. 규모 : 아파트 8-10층 1동 112세대

4. 사업시행기간 : 88.12 ~ 89.8.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역획정에 따른 동명칭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66호 (88.12.27) 에 의거 서대문구 동명 칭 및 구역획정이 다른 법정동 명칭 및 지번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2.29.

서 대 문 구 청 장

1. 시행일시 : 89.1.1

변 경 전				변 경 후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북아현동	3-369	대	53	충정로3가	7-28	대	53

변 경 전				변 경 후			
동 명	기 번	지 역	지 적 면	동 명	기 번	지 역	지 적 면
북아현동	3-367	대	60	충정로3가	7-29	대	60
	-366	대	99		-30	대	99
	-365	대	29		-31	대	29
	-576	대	34		-32	대	34
	-364	대	7		-33	대	7
	-516	대	17		-34	대	17
	-515	대	132		-35	대	132
	-517	대	192		-36	대	192
	-519	대	185		-37	대	185
	-518	대	13		-38	대	13
	-368	대	79		-39	대	79
	-520	대	40		-40	대	40
	-521	대	198		-41	대	198
	-526	대	245		-42	대	245
	-525	대	152		-43	대	152
	-522	대	149		-44	대	149
	-580	대	13		-45	대	13
	-370	대	17		-46	대	17
	-523	대	93		-47	대	93
	-524	대	116		-48	대	116
-581	대	110	-49	대	110		
-529	대	116	-50	대	116		
-528	대	165	-51	대	165		
-527	대	99	-52	대	99		
-531	대	10	-53	대	10		
-532	대	112	-54	대	112		
-533	대	73	-55	대	73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
북아현동	-530	대	188	충정토 3가	7-56	대	188
	-582	"	89		-57	"	89
	-534	"	132		-58	"	132
	-535	"	155		-59	"	155
	-536	"	119		-60	"	119
	-583	"	29		-61	"	29
	-537	"	46		-62	"	46
	-538	"	43		-63	"	43
	-584	"	9		-64	"	9
	-539	"	60		-65	"	60
	-540	"	56		-66	"	56
	3-541	"	83		-67	"	83
	-542	"	112		-68	"	112
	-543	"	46		-69	"	46
	-585	"	10		-70	"	10
	-545	"	23		-71	"	23
	-546	"	10		-72	"	10
대관동	17-20	"	16	북아현동	1-1695	"	16
	-3	"	15		-1696	"	15
	-19	"	39		-1697	"	39
	-18	"	39		-1698	"	39
	-33	"	2		-1699	"	2
	-30	"	4		-1700	"	4
	-31	"	5		-1701	"	5
	-32	"	30		-1702	"	30
	-29	"	12		-1703	"	12
	-28	"	81		-1704	"	81
	-27	"	46		-1705	"	46

80-60

제 1428 호 시

보

1989.1.7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대현동	-21	대	17	북아현동	1-1706	대	17
	-22	"	27		-1707	"	27
	-23	"	31		-1708	"	31
	-24	"	46		-1709	"	46
	-26	"	13		-1710	"	13
	-14	"	64		-1680	"	64
	-15	"	74		-1681	"	74
	-16	"	10		-1682	"	10
	-17	"	3		-1683	"	3
	-13	"	51		-1684	"	51
	-12	"	139		-1685	"	139
	-11	"	29		-1686	"	29
	-4	"	66		-1687	"	66
	-5	"	23		-1688	"	23
	-6	"	69		-1689	"	69
	-7	"	36		-1690	"	36
	17-8	"	3		-1691	"	3
	-2	"	5		-1692	"	5
	-9	"	54		-1693	"	54
	-10	"	37		-1694	"	37
	-25	"	20		-1711	"	20
	19-92	"	10.6		-1712	"	10.6
	-78	"	36.4		-1713	"	36.4
-80	"	33.1	-1714	"	33.1		
-238	"	3.6	-1715	"	3.6		
-81	"	36.4	-1716	"	36.4		
-239	"	5.2	-1717	"	5.2		
-82	"	46.3	-1718	"	46.3		
-83	"	66.1	-1719	"	66.1		

동명	지번	지목	지적면	동명	지번	지목	지적면
대천동	19-85	대	33.1	북아현동	1-1720	대	33.1
	-84	"	23.1		-1721	"	22.1
	-240	"	11.9		-1722	"	11.9
	-86	"	66.1		-1723	"	66.1
	-87	"	61.8		-1724	"	67.8
	-88	"	66.1		-1725	"	66.1
	-89	"	59.5		-1726	"	59.5
	-91	"	12.5		-1727	"	12.6
	-90	"	3.6		-1728	"	3.6
	산 5-2	임야	380		산 32-5	임야	380

◎ 강동구고시제 3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8.12.27
강동구청장

- 다 음 -

1. 사업명 : 천호동 아남산업㈜ 주택조

- 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동구 화양동 151-22 아남산업㈜ 직강주택 제 2 인가 조합의 2 개 조합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강동구천호동 168-6 의 14 필지 나. 면적 : 12,969.08
다. 규모 : 아파트 10층 2동 148 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8.12-90.5
5.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 조서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폐도임)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72	강동구 천호동 168-9	강동구 천호동 167-192	폐지

첨부 : 설계도서 (생략)

◎ 구로구고시제 103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4 호 (84.5.11) 호 및 구로구 고시 제 59 호 (88.7.1) 의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 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및 서울특별시 행정편한 위임조례 제 5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변경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2.24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 구로구 시흥동 966 번 지 일대

나. 사업시행기간: (준공 예정일 연 기)

○ 당초: 84.5.11 ~ 88.12.31

○ 변경: 84.5.11 ~ 89.6.30

다. 변경사유: 증축하고자하는 건축면

적이 2,000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 및 통사업 시행기간 추가소요

라. 기타내용: 당초의 변경사항 없음

◎ 구로구고시제 10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28 호 (88.4.1) 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 2 및 서울특별시 행정편한 위임조례 제 5 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2.26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천왕동 12-2번지 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신용보증기금 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폭 8 m, 연장 198 m
 ○올벽 - 당초 : H=1-3 m L=236.4 m
 변경 : H=1-3 m L=273.8 m
 라. 사업시행자 : 마포구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태원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 1988.4.1 ~ 1988.12.31
 ○변경 : 1988.4.1 ~ 1989. 3.31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11) 토지권리가 하고 구로구 고시 제 37 호 ('88.4.21) 토지권리가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같은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 같은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 및 서울시 권한위임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변경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1988.12.26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시흥동산 100-4
 번지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동일여자중·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주소 : 구로구시흥동산 100-4 학교법인 동일한원
 성명 : 이사장 한명숙

◎구로구고시제 1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4 호 ('82.9.14)

라. 사업규모

구분	기준면적 (가옥대장동계면적)	증축부분		계비고
		1차변경면적	2차변경면적 (금회)	
대지면적	43,585 ㎡	43,585 ㎡	43,585 ㎡	43,585 ㎡
건축면적	7,614.71	7,614.71	8,259.71	15,874.42 (증) 645 ㎡
연면적	29,995.93	31,338.44	34,154	65,492.44 (증) 2,815.5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1982.9.20 ~ 1989.6.30
 ○변경 : 1982.9.20 ~ 1990.6.30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지목과 소유권이
의외 권리명세: 별첨 (생략)
아. 사업제외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121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험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88 호 ('88.10.11)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허가한 바 있는 관악구 신림동 1523 번지 신림제일종합시장 증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2. .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관악구신림동 1523번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신림제일종합시장 증축
다.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 3,026.7 ㎡

건축면적	당초	기존: 108.10 ㎡
	변경	증축: 5.0 ㎡
연 면 적	당초	기존: 108.10 ㎡
	변경	증축: 4.85 ㎡
연 면 적	당초	기존: 3,492.2 ㎡
	변경	증축: 3,197.32 ㎡
연 면 적	당초	기존: 3,492.2 ㎡
	변경	증축: 3,383.13 ㎡

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신림동 1523번지
㈜오인환산 대표 ,장경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85.6
준공예정일 - '88.12.30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제인
의 주소, 성명: 별첨 (생략)

◎노원구고시제 345 호

하천정용 (전신전화지하관로매설)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하천
법 제 25 조 1 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 위임조례 제 5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정용허가 하였기 이
를 같은법 시행령 제 4 조 규정의 의
거 고시한다.

1988.12.2
노 원 구 청 장

허가일자	위 치	접용면적	허 가 내 용	수 허 가 자
'88.12	노원구 도봉동 86-3 하 천 (도봉천)	전신전화 지하관로 매설	1. 공작물 내역 인공 1기 관로 60m 면적 208㎡ 2. 접용기한: '88.12.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서울전신전화국장)

구 공 고

◎중랑구공고제 63 호

관 인 개 각 공 고










관인규정 제 8 조 및 중랑구 관인규 (개각관인승인 및 폐기인:아래)
칙 제 5 조의 규칙에 의거 개각 및







폐인된 관인 및 제인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중랑구 관인규칙 제 8 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12.20.
중랑구청장

인 영	(신 인 영)	(구 인 영)	인 영
공인	면목제 1 등장인 (일반사무용)	면목제 1 등 개인	면목제 1 등장인 (일반사무용)
인 영	면목제 1 등장인 (민원사무용)		면목제 1 등 개인
공인	면목제 1 등장인 (민원사무용)		면목제 1 등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 명	민국제 2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2 동 계인	민국제 2 동 계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2 동 계인
인 영				
공인 명	민국제 3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3 동 계인	민국제 3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3 동 계인
인 영				
공인 명	민국제 1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1 동 계인	민국제 1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1 동 계인
인 영				
공인 명	민국제 2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2 동 계인	민국제 2 동 장인 (일반사무용)	민국제 2 동 계인

인 영				
공 명	중화계 1 동장인 (일반사무용)		중화계 1 동장인 (일반사무용)	
인 영				
공 명	상봉계 1 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계 1 동계인	상봉계 1 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계 1 동계인
인 영				
공 명	상봉계 1 동장인 (민원사무용)		상봉계 1 동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 명	망우계 2 동장인 (일반사무용)	망우계 2 동계인	망우계 2 동장인 (일반사무용)	망우계 2 동계인

<p>◎송파구공고제 66 호</p> <p>관 인 사 용 승 인</p> <p>1988.12.20 자 신설되는 3개분소 (잠실본동, 방이동, 가락본동)관인 조 사용을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인</p>		<p>규칙 제 8 조에 의거 공고합니다.</p> <p>1. 관 인 명 : 신설 분소 민원용 직인 (잠실본동, 방 이동, 가락본동) 및 계인</p> <p>2. 사용개시일 : 1988.12.20</p> <p>3. 관인의 인영 : 아 래</p> <p>송 파 구 청 장</p>	
인 영			
공인명	잠실본동장의인	잠실본동계인	방이동장의인
인 영			
공인명	방이동계인	가락본동장의인	가락본동계인
<p>◎송파구공고제 67 호</p> <p>관 인 사 용 승 인</p> <p>1988.12.20 자 잠실본동 관인 개각 사용을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8 조에 의거 공고합니다.</p>		<p>1. 관 인 명 : 잠실본동장 직인 (민 원사무용) 및 계인</p> <p>2. 사용개시일 : 1988.12.20</p> <p>3. 관인의 인영 : 별 첨</p> <p>송 파 구 청 장</p>	

신 인 영		구 인 영			
인					
영					
공인명	장실본동장의원 (민원사무전용)	장실본동제인	장실본동장의원 (민원사무전용)		
<p>◎구로구공고제 107 호</p> <p>도시계획법 (시장) 시행변경 공람 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261호(84.5.12.)로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시행자로 부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 허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p>		<p>25조 2항 및 특별시행령 제 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함이다.</p> <p>1989.12.31</p> <p>구로구청장</p> <p>가.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시장)</p> <p>나. 의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966번지 일괄</p> <p>다. 사업규모</p>			
구	분	허가면적 (㎡)	허가변경면적 (㎡)	증 감 (㎡)	비 고
대 지	면 적	35,864.2	37,981.90	증 2,117.7	
건 축	면 적	10,724.94	11,343.51	증 618.57	
전 축	연 면 적	28,859.76	31,393.98	증 2,534.22	
라.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경기		다. 학공 및 준공예정일			
도 광명시 결산동 309번지		1) 착 공: '85.2.1.			
이전태의 214인		2) 준 공: '89.6.30.			

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공람장소 비치.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아. 기타 사항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장소인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공고제 13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

1. 서대문구 고사제 22 호 (87.6.11)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되고 동 고사 제 5 호 (88.1.14) 및 제 17 호 (88.8.18) 로 기변경허가되어 시행중인 서울외국인학교로부터 사업시행허가 변경신청이 있다.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6 호 (86.12.18)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관계도서를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한인에 보이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12.28

서 대 문 구 청 장

- 공 램 내 용 -

가.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 54,800㎡
 라. 건물면적 : 기존 - 23,268㎡, 금
 퇴 - 1,199.43㎡
 마. 사업시행자 : 연희동 55 번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유지재단 이사장 고 일 선.
 아. 사업의 준공예정일 : 89.10.31
 사. 사용할토지 및 건물소유자 :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소유
 아. 제적 설계도서 : 별첨 (생략)

◎서초구청공고제 174 호

주택지대생산업자등록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해 88.11.22 에 행한 다음 주택지대 생산업자의 등록 취소 처분을 피척분자의이의 신청에 의해 이를 동일자로 영업정지 3 월로 변경 처분하킬기 동법 시행령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공고합니다.

1988.12.29

서 초 구 청 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개 지	등록종목	변경 내용	영업종지 사유	영업종지 기간
19-10	용인건설	강 찬 진	서초구 방배동 602	보통시멘트기와	당초 변경 등록 취소 영업 정지 3월	c 등록기준 미달 · 대지: 자연속지 (건담)	85.11.22 89. 2.21
19-33	우강산업	김 신 지	서초구 방배동 2873	보통시멘트 벽돌, 블록	"	c 등록기준 미달 · 대지: 개발제한 구역 (건담)	"

사 업 소 고 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6 호

하천계속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8년 12월 20일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명
'88. 12.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188-2 원지선 (한강)	하천	149 제	사유지묘호	1988. 1. 1 1983.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188-2	한강관광호일 대표 정재욱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7 호

하천계속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점용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8년 12월 22일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명
'88. 1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원동 150 번지선 (한강)	하천	20,000 제	방글라이딩 실습장	1988.12.20 -1983.12.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천동 6 동 1687-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병준

사 령

◎ 1988년 12월 12일 6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신규임용 명 제 512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양근준	지방별정직 6급상당(비서)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 1988년 12월 19일 5급공무원전보 명 제 513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충환	내무국(시장실)	울림피관티담방관	지방행정사무원
인사건	청소년과 아동보호계장	내 무 국	"
이주영	연료과 열관리계장	"	"
정연찬	서초구	"	"
장경환	강남구	"	"

9급공무원신규임용(잠애지) 명 제 515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박용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신 규
홍정원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
이민호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
하성환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강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신	주
정종남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 1988년 12월 23일 6급이하공무원전보및과전해제 형 제 51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정훈	송파구	내무국	지방행정주사
우욱진	종로구	심사분석담당관	"
이홍열	서울시립대학교	내무국	"
박태운	문화담당관실 과전해제	종합민원실	"
김태현	"	영등포구	"
공재순	"	중구	"
이기현	건설행정과 과전해제	송파구	"
황청래	교통기획과	영등포구	"
임광복	중구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하성수	공무원교육원	세무지도과	"
윤희찬	문화담당관실 과전해제	전자계산소	"
김현조	"	노원구	"
김정오	"	강남구	"
권태오	교통기획과 과전해제	성북구	"
김병곤	시민과	양정과	"
은세기	유럽기획담당관실 과전해제	판암구	"
임상구	"	은평구	"
조동주	중구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배정남	동작구	구로구	"
유창일	문화담당관실 과전해제	구로구	"
김원개	서초구	관악구	"

◎ 1989년 12월 31일		'88 하반기 정년퇴직		경 제 51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정규원	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	내무국	지방외사		
박영근	"	성북구	지방서기관		
이인용	"	건설자재사업소	지방시설기정		
이권웅	"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문병규	"	은명구	"		
이범운	"	공무원교육원	"		
백준기	"	내무국	"		
유승희	"	강동구보건소	지방외사		
김민기	"	강동구	지방행정주사		
김남학	"	종로구	"		
이근영	"	용산구	"		
유경태	"	성북구	"		
서정설	"	노원구	"		
이기용	"	관악구	"		
고인상	"	서부위생처리장	"		
이종열	"	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김홍규	"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강신호	"	성동구	"		
허재환	"	동대문구	"		
김개성	"	성북구	"		
이만용	"	마포구	"		
김학수	"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이상휘	"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김두환	"	중구	"		
분명운	"	성동구	"		
최대영	"	녹지사업소	"		
여완구	"	서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장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선원	지방공무원법 제 56 조 제 5 항의 규정의 의거 정년퇴직	서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장
이재호	"	"	"
이수철	"	건설자재사업소	"
박부만	"	총무과	지방운전원
박종운	"	성북구	"
임재운	"	시초구	"
오덕환	"	농촌기도소	"
이홍록	"	새종문화회관	지방전기수
홍성학	"	종합건설본부	지방조무원
박순철	"	종로구	지방수도보조원
송래화	"	"	지방기계보조원
이광일	"	중구	"
남오현	"	"	지방수도보조원
김종래	"	"	지방감무원
김정국	"	"	지방행정보조원
한공필	"	용산구	지방기계보조원
김옥진	"	성동구	지방감무원
맹기호	"	성북구	지방수도보조원
최병원	"	"	"
조성식	"	노원구	지방기계보조원
김완중	"	시대문구	지방방호원
양희천	"	구로구	지방전달원
이창구	"	영등포구	지방기계보조원
김숙희	"	동작구	지방관리원
이성주	"	강동구	지방행정보조원
최원경	"	대한산배수지사무소	지방수도보조원
이경삼	"	영등포수원지	"
최진영	"	김포수원지사무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양호	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	시립대학교	지방잡무원
임학일	"	농지사업소	지방원예원
박경용	"	시립운동장	지방잡시원
황수산	"	시경찰국경무과	지방별정제 6급상당
최성낙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5 조 제 3 항에 의거 단연퇴직	북도수원지사무소	청원경찰

㉠ 1988년 12월 26일 4급이하공무원파견 명 제 51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재홍	행정과 (시민불편신고센터) 파견 ('88.12.26 - 별도지시시까지)	내무국	지방서기관
이상철	"	노원구	지방행정사무관
이용태	"	도봉구	"
박철규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건축기사
전정근	"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차용준	"	종합운동장관리(사)	"
김종근	"	동작구	"
이병창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조은영	"	충무과	지방타자원

㉡ 1988년 12월 14일 5급공무원추서 명 제 52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득우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동작구	지방행정주사

㉢ 1988년 12월 29일 4급이하공무원파견 명 제 52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한영	시정개발담당관 파견 (시정개혁연구위원회 행정반요원) ('88.12.29 - 별도지시시까지)	내무국	지방서기관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박동주	시정개발담당관 파견 (시정개발연구위원회 행정보요원) ('88.12.29 - 별도지시시까지)	동 작 구	지방행정사무관
박호주	"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
임상섭	"	은 밍 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12월 31일 6급이하공무원파견			령 제 523 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박영근	서울살림관리회조직위원회 파견 ('89.1.1 - 3.31)	내 무 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12월 28일 5급공무원파견해제			령 제 524 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황인봉	국가안전조정총제본부 파견해제	내 무 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직권면직			령 제 525 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박영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마원산책수지	지방별정직 6급상당
◎ 1989년 1월 1일 기술직공무원 5급승진임용			령 제 526 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윤석조	동작구보건소 방역과장 지방보건기과	동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노재봉	중구 " " " "	중구 " "	" "
김준은	도봉구 " " " "	도봉구 " "	" "
이윤형	구로구 " " " "	구로구 " "	" "
박충진	은평구 " " " "	은평구 " "	" "
백영주	성동구 " " " "	성동구 " "	" "
오강수	강동구 " " " "	강동구 " "	" "

◎ 1988년 12월 30일		기능직공무원징계처분		명 제 52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용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3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총무과	지방운전원 (기능 10등급)		
◎ 1988년 12월 31일		8급이하기술직공무원징계처분		명 제 52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영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원		
◎ 1988년 12월 31일		5급이하공무원파견및해제		명 제 5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재곤	행정과 (지방자치제추진반) 파견 (89.1.1 - 12.31)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최태성	"	투자관리담당관	"		
조관호	"	총무과	"		
전식진	"	한강관리(사)	지방행정주사보		
김근수	"	도로과	"		
정영길	"	강남구	"		
안병기	"	올림픽기획담당관	"		
박선봉	"	관악구	"		
강학성	사회과파견 (89.1.1 - 6.30)	양천구	"		
김남호	"	노원구	지방행정서기		
이두규	주택기획과 (주택건설확대추진반) 파견 (89.1.1 - 3.31)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기학	"	서초구	"		
김선경	문화담당관파견 (89.1.1 - 6.30)	불가지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형희	"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남	"	관악구	"		
장태인	"	송파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지철	문화담당관과전 (89.1.1 - 6.30)	관악구	지방행정주사
이상택	"	노원구	지방행정서기
김태택	"	구로구	"
하경세	강동구 (선사주거지관리요원)과전 (89.1.1 - 6.30)	문화담당관	지방행정직 6급 상당
이동명	법무담당관 (망원동소송대채추진반)과전 (89.1.1 - 3.31)	은평구	지방행정주사
이종교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송세근	운수 2 과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과전 (89.1.1 - 3.31)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유계용	"	서울대공원관리(사)	"
송의섭	"	차량정비사업소	"
김병직	"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보
김효환	"	임동포수원지사사무소	"
최경수	"	목도수원지사사무소	"
홍순동	"	천자제산소	지방행정직 8급상당
최승석	업무과 (부정담수조사반요원)과전 (89.1.1 - 3.31)	구로구	지방행정주사
김길환	"	동대문구	"
장영원	"	동작구	"
김준기	"	급수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득성	"	도봉구	"
최영	"	동작구	"
김규관	"	관악구	"
유상태	"	성동구	"
구창서	"	동대문구	"
김재중	"	중랑구	지방행정서기보
김태호	"	상봉구	지방행정서기
김재천	"	은평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주연	업무과 (부정급수조사반요원) 파견 ('89.1.1 - 3.31)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정영진	"	양천구	"	
김지선	"	서초구	"	
방철구	"	송파구	"	
이종욱	편제과파견 ('89.1.1 - 6.30)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권광욱	주말기획과 파견해제	서초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9년 1월 1일 6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명 제 53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봉호	증전구	올림픽토목담당관	지방임업기사	
전철규	관악구	농지사업소	"	
광형구	강남구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이강인	성북구	"	"	
박영규	동대문구	"	"	
서병관	서대문구	"	"	
김용배	중구	목동지구개발사업소	"	
임기순	마포구	"	"	
6급이하기술직공무원파견			명 제 53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민현기	보건위생과 파견 ('89.1.1 - '89.3.31)	노원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 1988년 12월 31일 4급공무원전보			명 제 533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급	원부서	직급
최경준	노무과장 직무대리	지방시설기장	도봉구건설국장	지방시설기장
권철문	도봉구 건설국장	"	내무국	"
서울특별시				